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를 2차례 등기 우편을 통하여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07. 29.

고령군수



1. 공고제목 : 행정처분(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조치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07. 31.(금) ~ 2026. 08. 15.(토) (16일간)
4. 공고대상

대상자 (대표자)	주 소	방치 폐기물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행정처분 (관련법규)	반송 사유
주식회사 우성** (195111- 0027***) (사내이사 김명*)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로5*번길 9-2* A동 *02호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436-10	부적정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부적정 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 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련한 자,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관라의무를 승계 한자 등 ※ <u>창원지법 밀양지원 2023고단132</u> <u>참조</u>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문부재

5. 공시송달 내용

가. 대상자 : 주식회사 우성**(대표자 : 사내이사 김명*)

나. 방치폐기물 소재지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436-10

다. 조치대상 : 부적정처리 폐기물 일체

라. 위반일자 : 2022.02.07. (실질적 대표자 김상* 조치명령 미이행일)

마. 위반사항 : 부적정처리 폐기물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미이행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132(2025.08.28. 선고)

※ 창원지방법원 2025노2133(2026.04.23. 선고) 참조

바. 처분(이행)기간 :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종료일로부터 ~ 2026.11.20.(금) 까지

사. 기타사항

- 2026.11.23.(월) 이후 부적정 폐기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경우 행정처분 미이행에 따른 고발장 접수 및 행정처분(2차) 부과
-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제거 조치 될 때까지 고발 조치 반복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경북 고령군청 수질관리팀(☎ : 054-950-652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안내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령군청 또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고령군청 또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